한국수산무역협회 공고 제2026-02호

한·중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(TRQ)물량 1차 수입권배분 공고

"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"(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-10호, 2023.1.17)에 따라 2026년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추천품명에 대한 배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 배분내역

품명	세번부호 (HSCODE)	배분물량 (kg)	수입이행기간 (배정물량의 수입신고 수리일)
바지락(염장 또는 염수장한것)	0307-79-3020	290,000	물량배정 통보일(전자계약체결일) 부터 **2026.3.31(화)**까지
바지락(냉동)	0307-72-3000	330,000	
복어(활어)	0301-99-9020	140,000	
아귀(신선 또는 냉장)	0302-89-9040	17,000	
오징어 기타 (기타, 조제, 보존처리)	1605-54-2099	1,300,000	

※ **오징어젓갈은 수입권공매 대상임**

※ **https://susantrq.kr 상의 배분 제목 : 공고문상 배분제목(품명) + FTA 수산물 1차 배분**

※ **배정물량은 순중량(Net Weight) 물량이고, 수입이행기간내에 배정물량 전량(100%)이 유효한 협정관세 적용 추천서를 적용하여 세관에 의해 수입신고 수리되어야 하며 (B/L에서 추천서 적용된 물량의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신고 수리일이 해당 배분의 수입이행기간 이내), 수입이행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 불가함(배분유의서 1.다. 용어의 정의를 참고할 것)**

(검사·검역 또는 수급의 어려움 등을 포함, 어떠한 경우도 수입이행기간 연장은 불가하므로, 수입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도록 배분 참여시 감염병(코로나 등) 확산 위험 증대 등 제반 형편을 고려하여 배분에 참가하여야 하며, 배정 후 수입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밀 검사·검역 소요 기간, 감염병(코로나 등) 확산위험, 물류 혼잡, 기상 상황 등도 예상하여 수입이행 소요기간에 반영하여 배분 참여 및 수입할 것)

2 배분신청자격

가.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(미신고 시 수입통관이 불가능함)를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격을 갖춘 자

나. **동일업체·동일품목·동일차수 중복 신청 금지** (금차 배분유의서 2.나. 참조)

※ **동일협정·동일품목·동일차수 배분에 주소지 분할(예 : @@빌딩 101호, 101-1호, 101-2, 101-라 호 등)된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시 신청할 경우 동일업체 중복 참가로 간주하며, 분할 주소지 업체 간 수입대행 신청도 불가함(유의서2.나.,9.나. 및 라. 참조)**

다. 수산물 TRQ 관련, 해양수산부 고시 및 한국수산무역협회 공고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 및 해당 제재업체의 대표자와 동일 대표자인 또다른 업체는 배분 참가 금지

※ 제재대상 업체 또는 해당 제재대상 업체 대표자와 동일 대표자인 업체는 수입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간 수입대행자로도 참가가 금지됩니다. (제재대상 업체를 수입대행자로 하는 수입대행계약 불인정)

라. 물량 배정 이후에라도 [2] 가. ~ 다.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배분 무효 또는 취소, 배분참가제한 및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 등 사후 조치 함

[3] 물량배정(배분) 일정

○ 참가희망 신청(2026년 1월 8일(목) 18:00시 까지) ⇒ 참가희망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·업체정보 일치 여부 등 확인(1월 20일(화)까지) ⇒ 배분참가 가능 여부 통보(1월 20일(화) 16시 이후) ⇒ (배분참가 가능자에 한해) 물량배정(1월 21일(수) 예정) ⇒ 물량배정 개별 통보(1월 22일(목) 이후 예정) 순

[4] 배분참가희망 신청 방법 (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사용 필수)

가. **마감일시 : 2026.1.8.(목) 18:00시까지** 수입관리시스템(https://susantrq.kr)에 배분참가희망 신청 등록

* 공정성 확보와 업체 편의를 위해 **방문 또는 우편(등기, 택배, 퀵배송, FAX, E-mail을 포함)을 통한 접수 또는 등록 및 제출서류의 사전 검토 의뢰 불가**

나. 동일 IP로 동일품명을 중복 참가희망 신청하는 것은 금지(금차 유의서 참고)

다. B/L양수도 금지

※ **수입대행을 희망하는 경우, 참가희망 신청 등록 시 수입대행신청서(배분유의서 별지 1)와 수입대행계약서(자유양식) 등을 모두 제출할 것**(참가희망신청 등록 마감 이후 제출 불가, 수입대행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금차 배분유의서 9.를 반드시 준수할 것**)

* 단, 제재대상 업체(제재업체와 동일 대표자인 타 업체를 포함한다)는 수입대행 불가함.

[5] 참가희망 신청 내용 및 업체정보 일치 여부 등 확인

가. 확인 주체 : (사)한국수산무역협회

나. 확인 대상 : 배분참가희망 신청 마감일시까지 https://susantrq.kr에 참가희망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해, 금차 배분유의서 4.라.에 따른 서류의 제출 이행 여부 및 제출된 내용과 https://susantrq.kr상에 등록된 업체 기준 정보와의 일치 여부 등 대조 확인

※ 제출서류(금차 배분유의서 4. 라. 참고) 전부 또는 일부의 누락이 있을 경우 보완 기회 없이 배분 대상에서 제외함

다. 확인 기간 : 참가희망 신청 마감 이후부터 결과 통보 시까지

라. 결과 통보 : 2026.1.20.(화) 16시 이후 / https://susantrq.kr 로그인 후 본인의 결과 확인

* https://susantrq.kr에 등록된 업체 대표자 및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2026.1.20(화) 16시 이후 신청 내용 등의 확인이 끝났음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발송(발신번호 : 010-4500-8572)

마. **참가 불가능 업체에 대한 보완 및 재심사 : 없음**

※ 참가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및 재확인이 없으므로 배분공고문, 배분유의서, https://susantrq.kr의 자료실 4번 문서를 참고하여 반드시 준수할 것

[6] 물량 배정(배분) 일시 : 2026.1.21.(수) 예정 (배분참가 가능 업체에 한해 배정)

[7] 물량 배정 통보(예정) : 2026.1.22.(목) 이후 (예정)

8 물량 배정(배분) 기준

가. 신청물량 총량이 배정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: 업체별 신청물량대로 배분

나.신청물량 총량이 배정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: 업체별 신청비율에 따라 배분

※ 다만, 2026년 전체 또는 개별 품명의 배정물량이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조정 시 업체당 최종배정 물량은 당초 배정 희망 물량을 초과하지 않음

9 기타

가. 배정물량 등 TRQ 수입권배분 권리의 유·무상 양수도 또는 전매 금지

나. B/L 유·무상 양수도 금지

다. 「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-10호, 2023.1.17.)과 금차 배분유의사항(유의서), 「2024년 배분 대상 전화(팩스)요금명세서 예시 참고자료」 및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발송되는 배정자 대상 배정통보 공지 공문 내용(추천신청서 승인 일정 포함)도 금차 배분공고의 일부이므로 고시, 공고, 유의서는 https://susantrq.kr에서 확인하고 배정통보공문을 확인하여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**세번부호 1605-54-2099인 중국 오징어 기타(기타,조제,보존처리) 품목의 경우, 옴마스트레페스(Ommastrephes)종, 로리고(Loligo)종, 노토토다루스(Nototodarus)종, 세피오투디스(Sepioteuthis)종의 것만 수산물 TRQ 배분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추천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.**

※ DOSIDICUS GIGAS(일명 대왕오징어)를 Ommastrephes Gigas로 표기하여 옴마스트레페스(Ommastrephes)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.

마. 타인의 경쟁 참가 또는 관계공무원(추천대행기관의 입찰 관계자를 포함한다)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(단순 가담한 경우 및 배정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) 등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-10호(2023.1.17.) 제24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)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 고시에 의한 적용을 받음

바. 금차 배분에서 배정받은 물량을 수입이행하지 못하거나, 지정된 기일까지 수입이행실적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수입 미이행으로 간주되는 업체의 경우, 금차 배분의 수입이행 기간 중 진행되는 차수가 다른 배분에서도 물량을 배정받는다면 동일품명 여부와 무관하게 차수가 다른 배분의 물량 배정은 이를 무효 처리함

2026. 1. 2.

(사)한국수산무역협회 회장